

# 曝 書 와 點 檢

白

麟

## (一) 曝書의 意義

曝書나 點檢은 圖書館에 있어서 每年 한번씩 하게 되는 큰 行事의 하나다. 曝書라는 말은 책을 日光에 쬐이고 去風한다는 뜻인데 여름이 되어 雨期에 접어들게 되면 濕氣가 많아지고 따라서 모든 책이 성하게 되는데 책이 腐蝕이나 蟲害도 이 夏季에 極히 甚한 것이다. 그리하여 雨期에 접어들기 前이나 지나워 濕氣로 인한 腐蝕을 미리 防止하기 위하여 日光이 좋은 때를 擇하여 책을 曝晒하고 去風한다. 曝書는 曝曬 또는 曝晒로 쓰여지는 때도 있는데 曝曬은 단순히 日光에 쬐인다는 뜻이고 曝晒는 그 俗語로서 다같이 책을 去風하고 蟲干한다는 뜻에서 使用되는 말이다. 하여튼 책을 曝晒한다는 것은 蟚干 또는 日光浴하여 消毒을 하고 따라서 去風을 시킴으로서 濕氣를 乾燥시켜 그 腐蝕을 防止하여 書籍을 오래도록 保存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曝書은 古圖書에 限한 問題인데 朝鮮紙나 唐紙는 洋紙에 比하여 책별례가 더욱 좋아하는 性質의 것이다. 그러나 近代洋裝本은 原料는 勿論 植物性이지만 古圖書와 같이 蟲害를 입지는 않는다. 그것은 洋紙가 朝鮮紙나 唐紙에 比하여 酸分이 적고 反面에 石灰質이 많이 含有되어 있어 종이나 책별례가 좋아 하지 않는다. 그리므로 洋紙로 된 圖書는 曝晒가 必要

치 않다. 萬一 洋裝本을 曝晒한다면 당장에 그 表紙는 뒤틀려지고 책의 製本을 상하게 하고 말것이다. 그러므로 洋裝本은 日光의 直射는 禁物이며 다만 書庫의 立地條件과 書庫內의 構造를 濕度의 調節이나 通風을 잘되게 하여 圖書의 腐蝕을 防止하는 도리 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曝晒와 點檢을 區別하여 說明키로 하겠다.

## 가. 曝晒의 時期

그런데 曝晒는 아무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一定한 時期가 있다. 책을 말리고 去風시키는 것이므로 흐린 날이어서는 않된다. 故人의 말에 依하면 曝晒에 가장 適切한 時期는 「入梅之前 出梅之後 故早者 在四月初 晚者 在七七六後」라고 하였다. 이 말은 장마철에 접어 들기 前 初여름 四月이나 雨期가 지나간 七月七日以後라야 한다는 것이다. 宋의 司馬溫公도 金華耕讀記에서 自述하기를 「曝書法每歲初夏 視晴明日」이라 하여 初여름이 曝晒에는 가장 適切한 時期로 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雨期前에 할것인가 雨期가 지나간 뒤에 할것인가가 問題이다. 年二回씩 曝晒를 한다면 별문제 이지만 많은 藏書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하여 大概는 年1회씩 하게 되는데 從來 내가 經驗한 바에 의하면 雨期가 지나간 뒤에 하는 것이 가장 効果의 아닌가 生覺된다. 왜

나 하면 初여름에 曝晒를 하였다고 해도 雨期에는 반드시 濕氣를 품어 졸파 곰팡이가 나게된다. 그러므로 初여름에 한것은 별로 効果를 보지 못하게 되고 雨期가 지난 後에는 다시 曝晒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曝書의 時期도 그러 하거니와 時間에 있어서도 考慮되어야 한다. 대개 曝晒는 1日 1회 或은 2회를 하게 되는데 上午10時부터 下後5時 사이에 行하는 것이 가장 効果의이라고 生覺된다. 그것은 朝陽이나 夕曠는 煙熱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하다.

曝書의 期間에 있어서도 古書 1,2千卷을 保有하는 小圖書館에 있어서는 2,3日이면 充分하고 또한 必要에 따라 隨時로 行할 수 있겠으나 數萬卷의 古書를 가지고 있는 大圖書館은 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될것이다. 林下筆記에 記述한 曝書法에서도 「一日曝晒數千卷而止, 藏書數萬者, 限以十餘日, 竣事限內, 或遇陰雨, 則更展那他日」이라 하였거니와 短時日內에 많은 數의 藏書를 曝晒하기는 場所와 人員이 問題다.

#### 나. 場 所

曝晒의 場所는 書庫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며 濕氣가 없고 乾燥한 地面으로 日光을 오래도록 잘 받을수 있고 또한 通風이 잘 되는 곳이라야 한다. 古圖書를 많이 所藏하는 大圖書館은 미리 부터 書庫屋上의 構造를 달리 하고 句配를 느리게 하여 曝書의 場所로 利用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다. 方 法

1回에 曝晒할 分量의 圖書를 一時에 曝書場으로 搬出하여 책의 먼지를 털고 請求番號順으로 列을 치워 뼈 놓고 間間히

人員을 配置하여 數時間 동안 좋은 日光 아래 摺葉風晾케 한다. 이렇게 하여 曝晒가 끝난 圖書는 順序대로 거두어 本來의 位置에 配列한다. 이와같이 하여 第1回가 끝나면 第2回, 3회로 繼續하여 같은 方法으로 曝晒한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注意해야 할 點은 請求番號의 順序와 冊을 잘 다루어야 한다. 古書는 數百年이 經過되는 동안 紙質이 變하고 強度가 몹시 弱해졌으므로 자칫하면 破冊되기 쉽다.

#### (二) 點檢의 目的

圖書館에 있어서 藏書點檢은 物品會計上의 現品調查와 같이 藏書의 實數를 調查把握함으로서 保管의 責任을 明確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圖書하나 하나의 有無를 調査하고 亡失圖書 및 無用圖書를 調査하여 除籍處分하고 同時に 該圖書에 對한 目錄카드를 除去하여 閱覽者の失望을 덜어주고 또 破損圖書를 調査하여 再製本케 하고 請求番號의 誤記나 脫落된 것을 發見하여 이를 訂正하고 書架上の圖書配列을 再整頓하여 混亂을 是正하여 藏書를 有効하게 保存管理하기 위함이 目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單只 帳簿上의 數字와 現品을 對照하여 計數만을 確實히 한다고 해서 點檢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藏書點檢은 圖書하나 하나의 有無를 밝히는 일인 것이다.

#### 가. 方 法

點檢은 대개 年1回하는데 閱覽者が 가장 적은 時期를 擇하여 休館하고 日常業務로서 中止할 수 없는 庶務나 會計事務를 除外하고는 全員이 이 點檢에 當해야 한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 같은에서는 放學期間을 利用하는 것이 가장 좋다.

點檢하는 方法으로는 短時日內에 調査를 끝내기 위하여 全館員을 動員하여 調査班을 編成하고 部門別로 分擔시켜 責任調查케 하는 一齊點檢과, 藏書의 數가 많아서 도적히 賦은 時日內에 點檢을 끝마칠 수 없을 때에 期別로 나누어 區分點檢하는 方法, 그리고 固定的으로 藏書管理의 事務를 맡아보는 職員을 配置하여 繼續的으로 點檢하는 方法이 있다.

一齊點檢에 있어서는 全體藏書를 靜止狀態에 두고 一時에 調査하게 됨으로 萬一圖書가 잘못 配列되었다 할지라도 쉽게 發見하여 訂正할 수 있다는 것이 長點이다. 그러나 全體職員이 點檢하게 됨으로 個中에는 調査方法에 익숙치 못하거나 誠意가 없어서 調査가 徹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10萬卷이 넘는 圖書館의 藏書點檢은 아모리 하여도 確實한 調査가 될 수 없다고 까지 말하는 분도 있다. 藏書의 點檢을 위하여 20日 혹은 1個月씩 休館하게 되면 利用者の 不滿이 를 것이다. 그러므로 大圖書館에 있어서는 期別로 나누어 區分點檢하는 곳이 많은데 이 方法에 있어서는 休館할 것 까지는 없지만 點檢하는 部分만은 閱覽貸出을 停止해야 한다. 그리고 이 方法은 一時에 調査하지 못하는 關係로 亡失圖書나 配列의 잘못을 發見하여 處理하기가 困難하다.

充分한 人員을 配定받아서 藏書調査係를 두고 이일을 專擔케하는 繼續的으로 하는 方法以上 確實한 것이 없다.

## 나. 計 劃

點檢에 있어서도 다른 業務와 같이 事業에 作業計劃와 모든 準備를 가추어 놓아야 한다. 即 藏書數에 따라서 點檢班을

編成하고 作業日程을 決定한다. 點檢班은 2名을 1組로 構成하는데 請求番號의 構成如何로 作業進度에 差異가 있지만 普通 1組의 1日의 調査能力을 約 2,000卷으로 본다면 藏書 10萬卷의 圖書館은 다음과 같이 點檢員과 作業日數가 決定된다.

總作業量 圖書 100,000卷  
所要延人員 110名

(調查員 20名 × 5日 = 100名)  
(連絡員 2名 × 5日 = 10名)

作業延日數 5日

위와 같이 人員과 作業日數를 決定하고 다음 事項에 對하여 미리 指置한다.

- 1) 點檢作業의 全體를 責任맡은 人은 事前에 2人을 1組로 한 點檢班을 編成하고 責任分擔을 配定한다. 그리고 作業目的을 決定하고 調査要領을 點檢者에게 徹底히 納得되도록 說明한다.
- 2) 藏書點檢을 위하여 休館을 할 경우에는 10日以前에 이를 公告해야 한다.
- 3) 新規貸出은 一切 中止할뿐만 아니라 貸出中인 圖書도 點檢始作前까지 全部回收해야 한다. 萬一 貸出者數가 많아서 그때까지 다回收할 수 없을 때는 貸出記錄에 依하여 點檢할 수 있도록 請求番號順으로 整備하여 놓는다.
- 4) 點檢前에 收入된 圖書는 可能하면 全部 整理를 完結하는 것이 좋다.
- 5) 紛失圖書 및 破損圖書의 調査書樣式을 만들어 둘것.
- 6) 以前의 點檢에서 不明으로 된 圖書의 書架目錄을 따로 排列해 둘것.

## 다. 點檢要領

처음 自己 分擔 書架의 圖書가 請求番號順序로 配列되어 있는가를 보고 書架의 뒤나 아래에 冊이 떨어져 있지 않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調査者中 한 사람은 圖書의 請求番號 書名을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書架目錄을 가지고 對照해 진다. 萬一多少라도 疑問이 있을 때는 著者名, 書名, 出版年度, 登錄番號까지 對照하여確實히 紛明해야 한다.

點檢途中에 所在不明의 圖書가 있을 경우에는 書架目錄카드를 모로 세워 두었다가 點檢作業이 끝난 다음 다시 한번 더 確認해 본다. 그때도 亦是 不明한 것은 不明圖書調査書를 作成하여 點檢責任者에게 報告한다.

그리고 現品은 있지만 書架目錄이 漏落된 것은 符箋紙를 달아서 그 圖書와 같이 責任者에게 보낸다.

萬一自己分擔外의 他部類에 屬하는 圖書를 發見했을 때는 即時 그 部類를 맡은 點檢班에 보내준다.

#### 라. 事後處理

이와 같은 點檢이 一段 끝나면 各班은自己分擔의 部分에서의 所在不明圖書, 請求番號訂正을 必要로 하는 圖書, 再製本을 要하는 圖書等의 調査書를 作成하여 點檢結果와 함께 全體責任者에게 報告한다.

全體 責任者는 各班에서 報告되는 것을 綜合하여 再確認한 다음 1年以上 不明圖書에 對하여는 閱覽用目錄카드를 除去하여 이를 請求番號順으로 따로 排列하였다가 後日 그 圖書가 再發見되었을 때 다시 排列할 수 있도록 對備하고 2,3回의 點檢에서도 亦是 不明인 것은 除籍手續을 取하여 廢棄處分케 한다.

再製本이 必要한 圖書는 破損의 程度를 보아 修理或은 再製本케 하고 再製本이 不能하거나 또는 再製本費로서 能히 그 圖書를 購入 代置할 수 있는 것은 再製本치 않고 手續을 取하여 廢棄處分함이 좋다.

請求番號 誤記나 脫落된 圖書가 書架目錄이나 또는 同圖書內에 記入된 記號와 照合하여 正確한 것을 判定한 後에 訂正記入해야 한다.

### (三) 結語

以上 曝書와 點檢에 對하여 略述하였으나 先輩諸兄의 經驗談도 듣지 못하고 또한 時間關係上 內容도 充分히 檢討하지 못한채 本稿를 내놓게 되어 꽤 慄懼하게 生覺한다.

그러나 古書에 對한 曝晒를 계울리하여 先代로 부터 傳하여진 우리나라의 貴重한 文化財를 腐蝕하여 없어지게 한다는 그것은 누구의 罪이고 또 年年이 해야되는 藏書點檢을 제대로 못하여 亡失圖書는 積累되어도 이점이 處理못되고 再製本을 要하는 圖書가 年年히 增加되어도 何等의 對策도 없어 書庫를 漸次 休紙의 더미로 化하는 結果가 된다면 이는 누구의 責任으로 들릴일인가 이點當局者나 圖書館責任者가十分理解하고 古典의 保存에 힘쓰고 活氣 있는 藏書로서 閱覽者를 맞는데多少라도 參考가될 수 있다면 筆者の 큰榮光으로 生覺하겠다.

(筆者 서울大學 中央圖書館 司書官)